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3

제안연월일 : 2006. 5. 15.
제 안 자 : 운 영 위 원 장

1. 제안이유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6. 4. 28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재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새로이 개정된 관련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신설된 월정수당 및 국내·외 여비 지급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중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월정수당의 지급 범위를 새롭게 규정(안 제1조)

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 결정(안 제2조)

다. 월정수당이 새로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지급하던 회기수당 지급 관련 조항을 월정수당 지급으로 수정(안 제3조)

라.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일 등 관련 조항 신설(안 제3조)

마. 지방의원의 국내 및 국외여비 지급을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부의장과 의원으로 차등 지급한 것을 일원화(별표 1,2)

바. 월정수당 등 지급을 2006. 1. 1부터 소급 적용토록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나. 예　　산 : 현재 부족분 예산에 대한 추후 추가경정예산안 확보 필요

다. 기　　타 : 2006. 4. 28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금
금액 결정 후 주민의견수렴을 통하여 2006. 5. 15자 확정 통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로 월 900,000원, 보조 활동비로 월 200,000원으로 한다"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로 한다.

제3조 (회기수당 지급)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월정수당 지급) ①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월정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일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 한다.

제5조제1항 중 "일비, 숙박료"를 "현지교통비, 숙박비"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한다.

제8조 중 "일비"를 "현지교통비"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기 지급한 회기수당과 정산하여 지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목적) -----「지방자치법」-------- ----------월정수당 ---------.
제 2 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의원이 의정자료 수집·연구 및 보조활동 등 이를 위한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로 월 900,000원, 보조활동비로 월 200,000원으로 한다.	제 2 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 3 조 (회기수당 지급) ①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 중 의회의 회의(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 3 조 (월정수당 지급) ①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회기수당은 1일에 100,000원으로 하여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②월정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일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제 5 조 (여비의 종류) ①국내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 ②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 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 5 조 (여비의 종류) ①----------, -------- 현지교통비, 숙박비, ------.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 여비는 항공임 ----------, 숙박비, 식비, 준비금----------.
제 8 조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시의 여비)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시에는 별표 1의 일비와 식비를 지급한다.	제 8 조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시의 여비) ---------- 현지교통비----------.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1)

현 행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제7조제1항 관련)

(단위: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인당)	숙박비 (1인당)	식비 (1일당)
의장, 부의장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10,000	46,000	25,000
의원	2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6,500	25,000	18,000

비고 : 1.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동일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미만인 경우 에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3. 철도운임 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4.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여비규정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 정 안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제7조제1항 관련)

(단위: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 지 교통비	숙박비 (1인당)	식비 (1일당)
영등포구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10,000	46,000	25,000

비고 : 1.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동일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현 행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제7조제2항 관련)

(단위:미불화)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1일당)	준비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의 장 부의장	·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급의 철도임 ·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급의 선임 ·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1등 정액	실비액	가등급 35 나등급 35 다등급 35 라등급 35	가등급 166 나등급 120 다등급 92 라등급 79	가등급 107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49	140	170	195
의 원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2등 정액		가등급 30 나등급 30 다등급 30 라등급 30	가등급 145 나등급 95 다등급 70 라등급 62	가등급 81 나등급 59 다등급 44 라등급 37	130	155	180

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동경,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일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칼,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2) 남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여비규정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개 정 안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제7조제2항 관련)

(단위:미불화)

구 분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의 장 부의장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 원	2등 정액	30	145	81	130	155	180

비고 :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 범위 안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2.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